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8. 17 선고 2022가단10701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

피 고 E

소송대리인 F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8. 17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 A, C, D에게 각 6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3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이, 원고 A, C,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6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
값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원고들과 피고는 2001년경부터 G마을친목회의 회원이다.
- 2) G마을친목회의 총회는 2015. 2. 8. 회원 41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들을 2014. 6. 27.로 소급하여 제명하는 결의(이하 ‘이 사건 제명결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나. G마을친목회의 총회 결의 등

G마을친목회는 2014. 12. 23. 회원들에게 1인당 9,000,000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,
G마을친목회의 총회는 2018. 1. 28. ‘G마을친목회의 당좌자산은 627,540,293원이고, 그 중
부동산 중개수수료 6,200,000원, 세무사비용 1,000,000원,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
160,104,810원, 변호사보수 5,000,000원, H 9,000,000원 합계 181,304,810원은 비용으로
지출되어야 하고, 잔액은 446,235,483원이다. 그 중 임원회의에 따른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
13,500,000원, 회원 여행경비 74,800,000원, 각 회원당 10,000,000원씩을 2018. 1. 29. 이를
각 지급하며, 남은 비용은 총회 식대를 제외한 잔여 재산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해산 및 청산하고,
잔여지분의 처분으로 해산과 관련하여 G마을친목회 임원 등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원
동등한 책임을 진다’는 내용의 결의(이하 ‘이 사건 해산결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다. 원고들의 소송 경과

- 1) 원고들은 G마을친목회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8659호로 분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7. 12. 이 사건 제명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'G마을친목회는 원고들에게 각 19,000,000원¹⁾ 및 이에 대하여 2018. 10. 11.부터 2019. 7. 1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9. 7. 30. 확정되었다.
- 2) 원고들은 G마을친목회의 대표자 회장 I, 감사 J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가소5834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2. 2. 16. 'I, J가 주도한 이 사건 결의는 900만 원의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회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,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을 20%로 제한한다'는 이유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,8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
- 3) 원고들은 G마을친목회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명1194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, G마을친목회는 2020. 10. 27.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이 없다는 신고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5호증, 제6호증의 7, 8,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원고 B의 소는 사망한 이후 소송위임을 받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 원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,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고,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는데(대법원 1979. 7. 24.자 79마173 결정,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다카21695 판결 참조),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2. 2. 4. 사망한 사실,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22. 3.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 B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.

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.

3. 원고 A, C, D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위 원고들의 주장

원고들은 G마을친목회에 대하여 1,900만 원의 판결금 채권이 있는데, G마을친목회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을 배제하고 잔여재산 627,540,293원 중 비용 181,304,810원과 포상금 13,500,000원, 34명에 대한 분배금 10,000,000원을 공제한 92,735,483원(= 627,540,293원 - 181,304,810원 - 13,500,000원 - 10,000,000원 × 34명)을 피고를 비롯한 34명의 회원에게 각 분배하였다.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그 분배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2,727,514원(= 92,735,483원 ÷ 34명)을 G마을친목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무자력인 G마을친목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각 68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- 1) 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마을친목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각 1,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, 이를 간과하고 회원 34명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G마을친목회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분배받은 금액인 2,727,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- 2) 더욱이, 이 사건 해산결의 당시 잔여지분의 처분으로 해산과 관련하여 G마을친목회 임원 등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원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제명결의가 효력이 없어 위 원고들은 G마을친목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,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해산결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분배받지 못한 1,9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.
- 3) 따라서 피고는 원고 A, C, D에게, 위 2,727,514원의 각 1/4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6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2. 3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
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 A, C,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윤아영

1) 2014. 12. 23.자 총회결의에 따른 분배금 900만 원 + 2018. 1. 28.자 총회결의에 따른 분배금 1,000만 원